거창군 지방공무워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17~63

제 출 자

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지역공동체사업, 저출산 대응체계,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일반직 6급 이하 정원: 변동없음
 - 현행: 605명(본청266명, 의회11명, <u>직속기관102명</u>, 사업소49명, 읍39명, **면138명**)
 - 조정: 605명(본청266명, 의회11명, <u>직속기관100명</u>, 사업소49명, 읍39명, **면140명**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2조, 제24조, 제29조, 제30조, 제38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개혁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7. 5. 11.~5. 31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		
직급별					소계	농업 기술센터	보건소	사업소	이비	면
茎。	계	676	284	14	133 135	69 71	64	54	40	151 149
정무직		1	1							
일 반 직	소계	644	280	14	106 108	42 44	64	53	40	151 149
	4급	1	1							
	4~5 급	3	2		1		1			
	5급	35	11	3	5	4	1	4	1	11
	6급 이하	605	266	11	100 102	40 38	62	49	39	140 138
별정직 (6급 상당 이하)		1	1							
연구직 (연구사)		5	2		2	2		1		
지도직 (지도사)		25			25	25				